

아프리카연구소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부설 아프리카연구소(Africa Research Center, 이하 “본 연구소”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연구소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각도의 연구를 통해 국내 아프리카 지역 연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소재지)

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내에 둔다.

제4조 (사업)

본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역 정보 수집 및 제공, 아프리카 지역 연구 역량의 강화
- ② 국내외 선도급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
- ③ 해외 연구자 초청 및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협력
- ④ 전문학술지, 연구서 및 대중서,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등의 발간
- ⑤ 교내외 학부 및 대학원 아프리카 지역 연구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
- ⑥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- ⑦ 정기적 세미나, 워크샵 및 테마별 심포지움 개최를 통해 소속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 도출
- ⑧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시행

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5조(조직)

- ①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
1. 연구소장
2. 연구부
3. 대외협력부
4. 행정지원부
5. 운영위원회
6. 자문위원회

- ② 각 부 또는 팀의 구성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제6조(연구소장)

- ①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- ②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유관 대학(원)장의 추천,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10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. 단, 연임 임명 시에는 대학(원)장 추천 및 학술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7조(연구부)

- ① 연구과제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연구부장은 해당 연구부 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연구원의 활동을 지도 감독한다.

제8조(대외협력부)

- ① 연구소의 대외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대외협력부장은 해당 대외협력부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
제9조(행정지원부)

- ① 연구소의 행정관리, 기획, 학술, 재정, 시설 및 기자재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- ② 행정지원부장은 해당 행정지원부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.

제10조 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 - 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- 2. 조직
 - 3. 제 규정의 개폐
 - 4.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
 - 5. 연구소장 추천
 - 6. 연구원, 연구조원, 행정요원 등 임명
 - 7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연구소의 연구원 중 연구소장이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자문위원회)

- ①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주요 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상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구성원)

- ① 본 연구소에는 「부설연구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한 상임 연구원, 전문 연구원, 객원 연구원, 일반 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요원 등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소 구성원의 구분 및 운영과 인사관리는 본교 「부설 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한다.
- ③ 연구원은 연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논문 발표 시 연구소 소속임을 명기한다.

제3장 재정 및 기타

제13조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- 1. 교내연구비
- 2. 대외학술연구과제 수주의 수탁금
- 3. 보조금 및 기부금
- 4. 기타 수입

제14조(회계)

- ① 재원에 따라 교비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로 구분·운영하며, 교비 또는 대외과제·용역 수주 등에 따른 경비 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.
- ②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.

제15조(보칙)

- ① 본교 「부설연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과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 규정에 따른다.
- ② 본 연구소가 해산할 때 시설과 기자재 등의 재산은 폐쇄 다음 달 내 본교에 귀속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